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장기요양기관장
(경유)

제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(2025.2.) 개정 등 안내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에 애써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(2025.2.)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귀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○ 2025년 교육대상: 출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

○ 안내경로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: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종사자교육
- 장기요양기관 포털: 기타 > 게시판 > 공지사항

< 주 요 내 용 >

- 1) 보수교육 면제조건 및 온라인교육생의 이수 조건 완화
 - 면제 조건: '국시원 합격 확인서' 또는 '요양보호사 자격증'(최초 교부년도 기준)
 - 이수 조건: ①온라인교육 (선)수강, ②수강시작일부턴 30일 이내 이수, ③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
⇒ 3개 항목 모두 '의무'에서 '권고'로 변경
- 2) 강조사항
 -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완료하여야 '이수'로 인정
 - 요양보호사는 교육 참여 시 자격번호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명 인식, 신분증 필참
- 3) (참고)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'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' 추가 예정(3월부터)